## 경비업법 정오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73	28줄 제342조(미수법)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법
128	박스 10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실시계획을 <mark>매년</mark> 수립하여야 한다.
129	박스 13줄 헌병병과~	군사경찰병과~
144	문제 02. ③ 헌병병과~	군사경찰병과~
156		추가 5.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제27조의 3) 법제 27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죄공)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처리)형법 제132조(알선수뢰)
201	5. 청원경찰 임용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5. 청원경찰 임용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청원경찰 복무	나지 아니한 자
206	박스 5번째 칸 (허위 보고 등의 금지)	(거짓 보고 등의 금지)
210	20.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 등 박스 2번째 칸 (직권남용)	(직권남용 금지)
234	문제 37 ③ 청원경찰의 집단 행 위의 금지	③ 청원경찰의 복종의 의무
234	해설 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259	문제 37 해설 ④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 호.	삭제
260	문제 39번 ② (전투경찰순경 포함)	(의무경찰순경 포함)
262	문제 44번 청원경찰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③ 집단행위 금지 위반(국가공 무원법 제66조)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문제 44번 청원경찰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③ 쟁의행위 금지 위반(청원경찰법 제9조의 4) 해설 청원경찰법 제9조의 4(쟁의행위의 금지
277	문제 79번 해설 ① (집단행위금지 규정등) 및 경 찰공무원법(허위보고 등의~	① (삭제) 및 경찰공무원법(거짓보고 등의~

	문제 21번	
31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	청원경찰법 제9조의 4(쟁의행위금지)~
	단행위금지)~	
316	정답	②
	21. ③	
325	문제 27번 ① 국가공무원법 제	①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56조(성실의무)	
329	정답 21. ③	2
	정답 27. ①	4
342	문제 36번	
	①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①청원경찰법 제9조의 4(쟁의행위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415	10번째 줄 3. 헌병병과 부사관~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493	18번째 줄 2. 군 또는 전투경찰	군 또는 의무경찰에~
	에~	